



장애 미국인 법령(ADA)

##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ADA 지침서

Regional Disability and Business Technical Assistance Centers 제공  
1-800-949-4232 (v/tty)





## **복사**

본 서류의 복사를 권장합니다.

## **책임한계**

본 간행물은 장애 및 기업 기술 협력 센터 (DBTAC)에서 번역하고 인쇄한 것이며 미국 교육부 산하 국가 장애 및 복원 연구소에서 자금을 지원 협찬하였습니다.

본 간행물은 법무부의 문서를 근거로 하여 번역한 것이나 외국어 번역물의 법적 완비성 심의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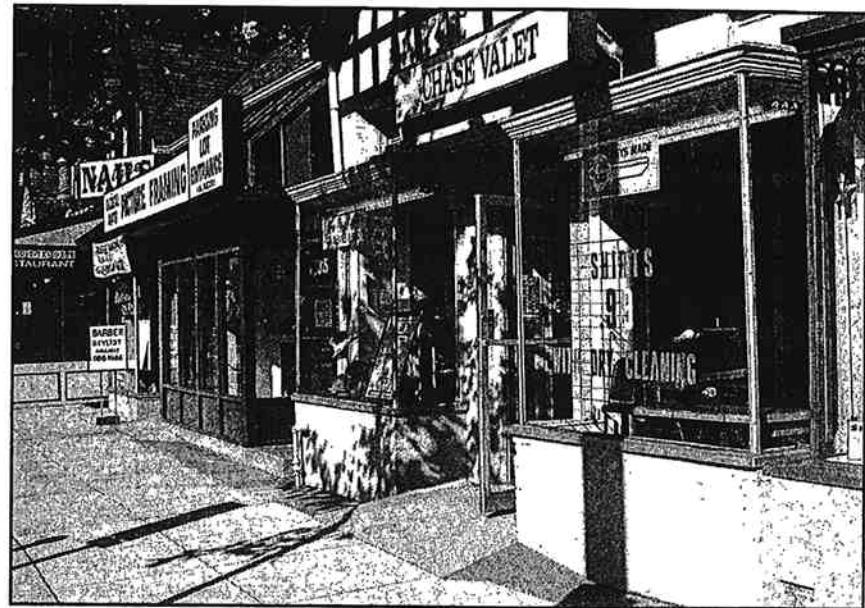
## 목 차

---

개요 .....	1
장애인법령 .....	1
대중을 위한 사업체: 공중편의 시설 .....	2
기준 시설 .....	2
건축 장애물 .....	3
건축 장애물의 제거 .....	3
장애물 제거의 우선순위 .....	3
장애물 제거의 예 .....	3
주차편의 시설 .....	4
장애인 편의 도모 출입구 .....	6
사업체 출입구의 출입문 .....	8
출입구의 회전대 및 경비문 .....	8
선반 및 거동 공간 .....	10
판매 및 주문 카운터 .....	11
음식 제공 카운터 .....	12
고정의자 및 식탁 .....	13
정책 및 절차 .....	14
고객과의 의사 소통 .....	14
세금여신 및 공제 .....	14
신축 및 개축 .....	15
ADA 정보원 .....	15

## 개요

본 지침서는 대중을 위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사업체를 위하여 만들어진 비공식 인쇄물로서 ADA 규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ADA 규정과 법률에 나와있는 "법적" 용어를 대부분 생략하고 있으나 ADA 준수사항을 법률과 따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으므로, 본 지침서는 규정관련 중요부분 및 정보에 대한 언급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ADA 해당법규에 관한 문의사항은 미법무성의 ADA 문의전화번호로 하여 주십시오.  
(1-800-514-0301 육성,  
1-800-514-0383 TDD).

## 장애인법령

장애인법령(ADA)은 연방민권법의 일환으로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거나, 동네 식당에서 식사를 즐기거나, 동네 헬쓰 클럽에서 운동을 한다거나, 또는 동네 자동차 정비소에서 차를 손보는 일 등의 일상활동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외하는 행위는 금지하는 법령입니다. ADA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으로서 모든 개인업체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준수사항은 1992년 1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영리, 비영리 단체에 모두 유효합니다.

소규모 사업체에 있어 ADA 준수사항 이행은 어렵지 않습니다. 각 사업체의 준수사항 이행 노력을 돋기 위하여 국회는 기술보조 프로그램을 설치한 바 전화 한 통화만으로도 ADA 관련 궁금점을

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성에서는 무료 ADA 정보 연락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00-514-0301 육성, 800-514-0383 TDD). 또한 세금여신 및 세금공제를 통하여 장애인 출입편의 도모를 위하여 쓰여진 비용을 매년 상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체로서 훨체어 이용인 등의 장애인 출입편의 도모을 위해 사업소나 가게에 큰 물리적 변화를 준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1993년 이전의 기존 시설에 대하여 ADA의 준수사항은 1993년 초에 신설되었거나 1992년 말에 개축된 시설에 비하여 덜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 대중을 위한 사업체: 공중편의 시설

대중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업체를 공중편의 시설이라고 ADA는 정의합니다. ADA는 12개의 범주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공중편의 시설을 분류하는데, 대부분의 대중을 위한 사업체의 모든 형태가 이 범주에 속합니다. 다음: 상점 및 가게 (스토아 및 은), 식당 및 술집, 음식점, 영화관, 호텔, 오락시설, 사립박물관, 학교 외 기타.

대중을 위한 시설을 소유, 운영, 임대, 또는 차임하는 경우, 기존 시설과 마찬가지로 나중에 신설 또는 개축되는 시설에 대하여도 ADA 준수사항을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건물 규칙 담당자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는 "원칙(Grandfather Provision)"을 근거로 하여 기존시설에 대한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인쇄물은 대중을 위한  
상품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에 촛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규모, 소규모, 영리,  
비 영리 사업체를  
모두 포함합니다.



### 기존 시설

많은 사업체 시설이 휠체어 이용인 등의 장애인 출입편의 도모를 염두에 두고 건축되어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출입의 제약은 많은 장애인들이 일터로 가거나,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등의 일상활동을 불가능케 합니다. 장애인이 그들의 동네에서 일상생활에 참여하기 위하여서는 그 동네 비지네쓰에서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고 ADA는 믿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체에 있어서 기존 시설을 장애인 전면 출입 가능케 하는 일이 불가능 하겠으나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또 어렵지 않게 출입편의 도모를 할 수 있는 길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하기에 ADA는 사업 경영에 피해를 입히지 않을 정도의 비용의 한도내에서 출입편의 도모를 기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대중을 위한 사업체를 소유하거나 운영할 경우 귀하는 "수월히" 제거할 수 있는 입체 "장애물"은 모두 제거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수월하다는 말은 손쉽게 또는 저렴하게 제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월히"한다는 말의 의미는 각 사업체의 크기와 재정에



의거합니다. 그러하기에 재정이 많은 큰 규모의 사업체는 작은 규모의 사업체보다는 더욱 적극적으로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ADA는 경기에 따라, 사업체의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할 경우, 장애물 제거의 시기가 지연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장애물 제거는 지속적인 의무입니다 ... 향후에 경기가 나아지면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 건축 장애물

건축 장애물은 물리적 장애로서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출입을 방지하거나 제한하는 것들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휠체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없는 좁은 주차공간; 출입구나 판매공간에 있는 계단; 잡기 힘든 동그린 문 손잡이나 다른 철 물질; 휠체어, 전기 스쿠터, 보행기등의 이용자가 다닐 수 없을 만큼 좁은 통로; 높은 자리에 위치한 카운터 또는 좁은 계산대(첵크아웃)통로; 식사 공간에서 휠체어 이용자가 앉기에는 너무 낮은 고정 식탁 또는 고정 의자가 붙어 있어 식탁 밑으로 휠체어를 넣을 수 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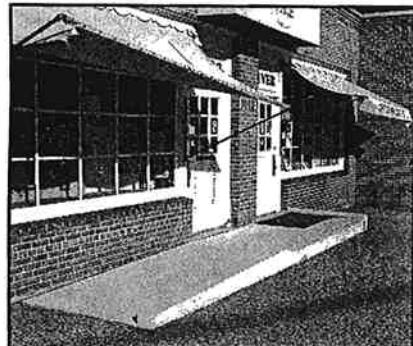
주차공간이 좁고 자동차출입통로가 원활치 않아 휠체어 이용자가 차에서 내리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계단은 고객이 사업체를 방문하는 것을 증지시킨다

## 건축 장애물의 제거

장애물 제거의 평가를 위하여서는 ADA 제3 법규중 일부분인 'ADA 출입편의도모 설계 기준'을 참고하십시오. 또한 지역내 장애인과 장애물 제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 도움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들과 함께 장애물을 식별할 수 있고 또한 해결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차양과 차양버팀이 출입구로 향한 인도에 너무 가깝게 설치되어 맹인 또는 육안장애인에게는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장애물 제거시에는 ADA 출입편의 도모 설계 기준(이하 기준)에 명시된 신축 설계 준수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준 상황 또는 재정의 한계에 의하여 "용이하게" 이 기준을 전면 따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지대한 위험을 끼치지 않는 한도내에서 본 기준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도모하고, 다음은 공중 전화 및 식수 분수 이용을 제한하는 장애물 제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장애물 제거의 우선순위

장애물 제거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인도, 주차시설, 대중교통 등을 우선시 하고 상품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영역의 출입편의를 고려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장애물이 제거된 후에는 공중화장실(고객용으로 쓰여질 때)의 출입편의를

## 장애물 제거의 예

다음 예는 흔히 있는 장애물에 대한 것으로서 용이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애물 제거의 용이 여부는 각 사업체별, 상황별로 자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 주차 편의 시설

대중 주차시설이 제공되는 경우 지정이 용이하다면 장애인을 위한 출입공간이 지정되어야만 합니다. 주차공간과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주차공간의 왼쪽, 또는 오른쪽에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출입통로 공간은 휠체어, 전기 스쿠터, 그외 이동장치 사용자가 승용차나 밴차에서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차공간 앞에는 국제 심볼로 그려진 장애인 출입표지판이 있어야 하며, 주차된 차에 의하여 가려지지 않을 만큼 높은 위치에 있어야만 합니다.

주차출입 공간은 출입가능 출입구의 가장 근접한 곳으로 평평한 지면이어야 합니다. 출입통로로 부터 출입가능 출입구까지 출입로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출입로는 금경사, 충계 등이 없으며 단단하며, 고정된, 미끄럼지 않은 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밴차 출입가능 공간의 경우 출입 통로의 넓이가 최소 8피트가 되어야 하며 “밴출입 가능”의 국제 심볼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주차 공간까지의 차량루트, 주차공간, 차량 진입, 퇴출 공간 등에는 수직 98인치 이상의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8피트 이상 너비의 주차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주차공간까지의 차량루트, 주차공간, 차량 진입, 퇴출 공간 등에는 수직 98인치 이상의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밴 출입 가능” 국제 심볼로 표지판을, 주차된 차로 인하여 가리워지지 않을 정도로 높은 곳에 설치하십시오.



최소 8 피트  
주차공간과 출입통로를 비교적 평평한 곳에 선정하십시오. (가능하다면 1:50 사방 최고경사를 권장합니다.)

밴차 주차공간 출입통로는 8피트 이상으로 하여 측면리프트를 이용하여 휠체어, 스쿠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빌딩의 출입구로 통하는 출입로를 제공하십시오. 출입로가 자동차 길을 지나는 경우 횡단길에 표시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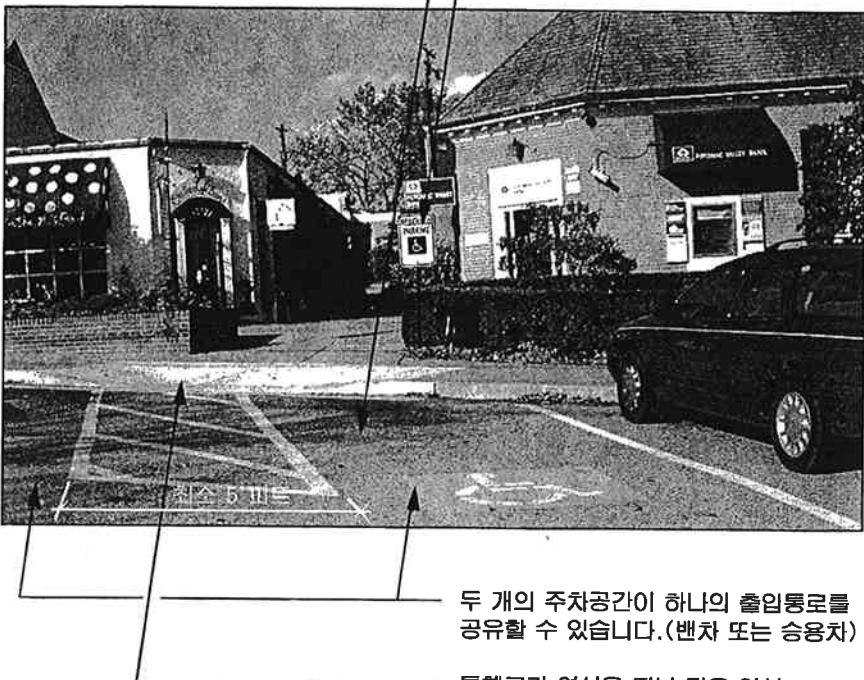
### 밴차출입 가능 주차공간

(8개중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모든 장애인 출입가능 주차공간은 밴차 출입가능 주차공간이어야만 합니다. 밴차 출입가능 주차공간으로 지정되어 있어도 승용차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 출입가능 공간은 출입가능 출입구에  
가까이 그리고 빌딩으로 통하는  
통로상에

장애인 출입가능 국제 심볼로 표시를  
하시고 주차된 차에 의해서 가리워지지  
않을 정도로 높은 곳에 표지판을  
달아주십시오.

주차공간과 출입통로를 비교적 평평한  
곳에 선정하여 주십시오.(1:50 전면  
최고 경사)



통행로가 연석을 지날 경우 연석  
진입로(커브 램프)를 설치하십시오.  
주: 연석 진입로가 통행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주: 승용차 장애인 출입가능 주차공간의  
통로는 최소 5피트의 너비이어야만  
합니다.

승용차출입을 위한 주차 공간일  
경우, 출입통로는 **최소 5피트**  
입니다. 그 외 사항은 모두 밴차와  
같습니다. 다만, 국제 장애인  
출입가능 심볼이 필요할 뿐이며  
최소 수직 높이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장애인 출입가능 주차공간의 수는  
총 주차가능 공간의 수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만약 주차장의  
주차공간이 25개나 그 이하일 경우  
장애인 출입가능 주차공간의 수는  
1개 이면 되고, 50개나 그 이하일  
경우는 2개 이면 됩니다.

만약 장애인 출입가능 주차공간의  
수가 1개일 경우에는 반드시 밴차  
출입가능 공간이어야 합니다. 1 개  
이상의 장애인 출입가능 주차공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8개중 하나는  
반드시 밴차 출입가능 공간이어야  
합니다.

만약 주차공간이 건물 출입구  
가까이의 여러 곳에 산재해 있을  
경우, 가능하면 출입주차 공간 또한  
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밴차 출입가능 공간의 수는  
제한되어 있으므로 여러 곳에  
분산시키기 어려울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 승용차 장애인 출입가능 주차공간

## 장애인 편의도모 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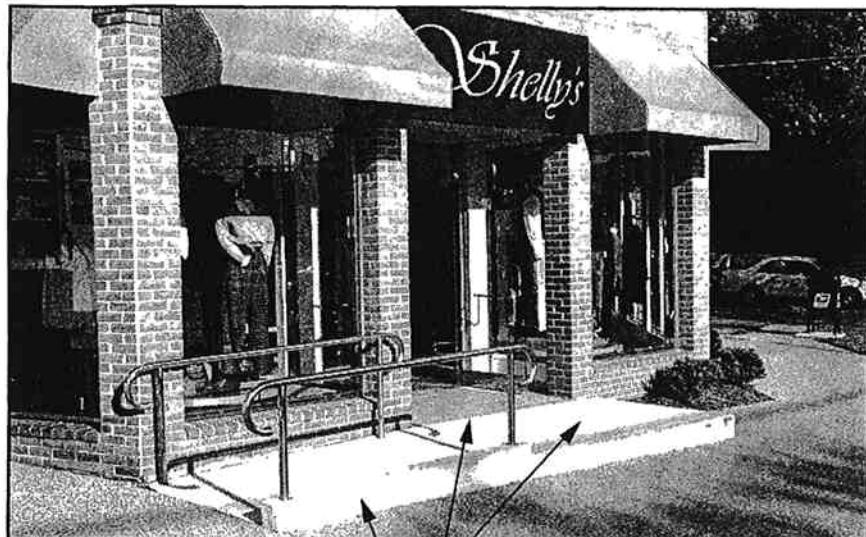
장애인 출입편의가 고려된 인도, 대중교통수단, 주차공간 등을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상품,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데 있어서의 기본입니다. 계단이 한 개만 있어도 휠체어, 보행기, 지팡이 등을 이용하거나 이동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출입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출입구에 한 개 또는 두 개의 계단이 있는 경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장애인 출입을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체 출입구를 이용한다거나, 짧은 램프를 더하거나, 출입구를 변형시켜 계단을 없애거나, 또는 리프트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체에 두 개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둘 중 하나만 장애인 출입 편의를 고려한 것이면 됩니다.

사진에 나오는(오른쪽 하단)

가게의 경우, 행길로 출입구가 하나 나 있고 가게 반대편의 벌딩로비로 통하는 장애인 출입가능구가 있습니다. 로비 출입구를 통하여 가게로 들어 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두 출입구 중 하나만 장애인 출입가능시엔 출입가능문이 어디있는지 나타내는 표지판이 있어야 합니다. 대체출입구는 영업시간중 열려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대체출입구가 안전의 이유로 잠겨 있을 경우 초인종이나 벨 등으로 직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초인종, 벨 등이 이용될 때에는 출입편의가 고려된 통행로에 48인치 이하의 높이로 설치되어야만 합니다.



램프 모서리 보호대는  
사람들이 램프의 가장자리로부터  
구르지 않도록 예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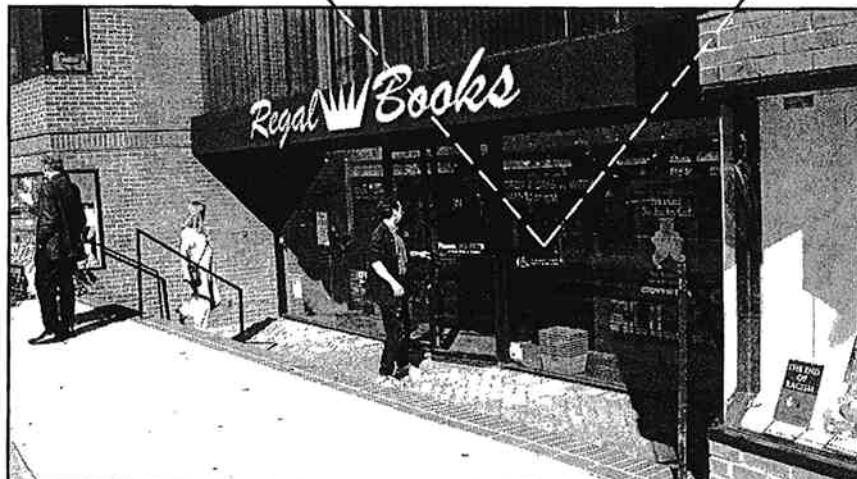
착안지가 넓으면 가게 출입시  
필요한 넓은 회전을 가능케합니다.

신설램프의 모서리보호대, 난간, 넓은 표면 등은  
장애인 출입을 가능케합니다.

출입편의 도모를 위하여 램프를  
신설할 때, 램프의 경사는 낮을수록  
좋으며 가능하면 1:12 이하로  
합니다. 만약 경사가 1:20 이상이고  
수직높이가 6인치 이상인 경우에는  
난간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1:20의

경사는 각 20단위의 수평거리에  
대하여 1단위의 수직높이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램프 건너편의 부분이  
가파른 내리받이인 경우 그 부분을  
평평히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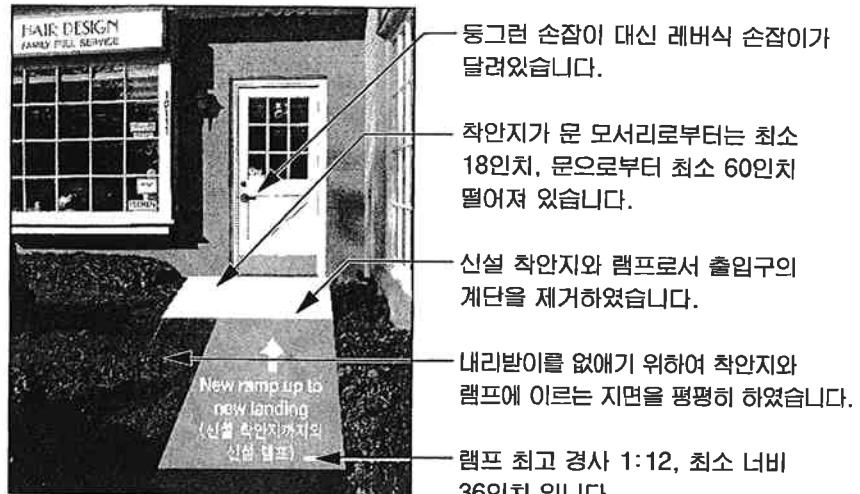
가까운 장애인  
출입가능 출입구를  
나타내는 표지판



출입이 가능치 않는 출입구에 출입가능 출입구가  
어디에 있는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리받이가 있는 경우는 모서리를 높이거나 난간을 설치하는 등 하여야 합니다. 모서리 보호대는 사람들이 램프에서 굴러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중요합니다. 사진에 나온 램프는 (6페이지 오른쪽 상단) 난간과 모서리 보호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모서리 보호대는 난간 밑부분을 표면과 병행시켜 연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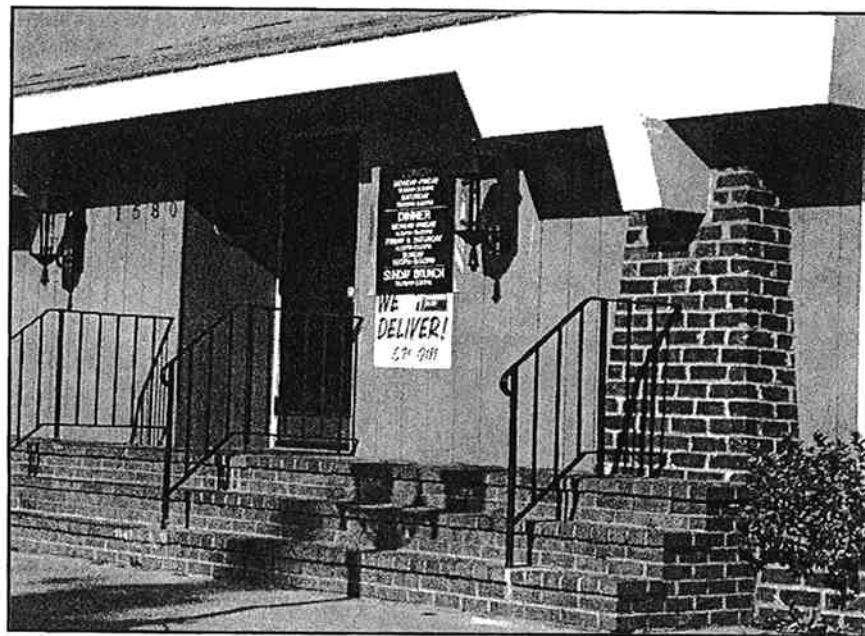
사진(오른쪽 상단)에는 출입편의 도모가능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출입구 부분에 평평한 착안지를 만들어서 출입문을 여닫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착안지 인접부분은 착안지와 같은 높이로 되어있기에 착안지와 잔디 사이에 내리받이가 없으므로 따로 난간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지면 또한 램프와 같은 높이로 만들어져서 내리받이를 없앴습니다.



신설 착안지, 램프, 레버식 손잡이 등이 있어서  
이 사업체로의 출입을 가능하게 합니다.

출입구 출입편의 도모을 위하여 플랫폼 또는 접을 수 있는 리프트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리프트는 휠체어, 스쿠터 이용인을 몇피트씩 위,아래로 이동시킬 수 있는 기계 장치입니다. 램프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좁거나 여러 개의 층계가 있는 경우 리프트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로서

만약 사진속의 (6페이지, 오른쪽 하단) 서점에 대체 장애인 출입가능 출입구가 없었다면, 대신 리프트를 설치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리프트는 정기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하며 안전법규를 따라야 하지만, 램프설치가 가능치 않은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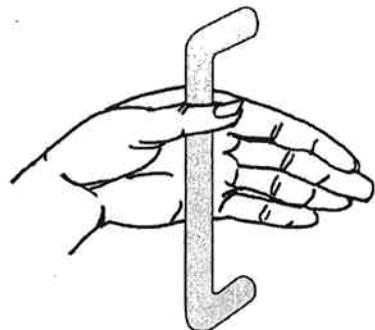


출입구 출입편의도모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가능한 한 가정배달, 테이크 아웃,  
인도배달 (커브사이드 딜리버리) 등의 대체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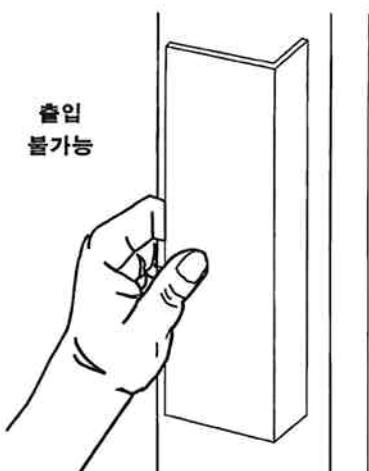
## 사업체 출입구의 출입문

대부분의 상점 및 사업체는 너비 36인치의 출입문을 이용하므로 장애인 출입이 원활합니다. 그러나, 재래식 문짝은 너비 36인치에 못미쳐 공간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완전 개문시 32인치의 열린 공간). 문이 열리는 공간을 넓히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문짝이나 문틀을 바꾸지 않고도 특별 "스윙 클리어" 경첩을 사용하여 대략 1.5인치 가량 공간을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문에 달린 철물 때문에 출입이 방지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손잡이는 문을 열기 위하여서는 손잡이를 꼭 잡게 되어있는데, 이동장애가 있는 또는 관절염 등으로 손이 불편한 많은 장애인들에게는 이런 종류의 손잡이로 문을 여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엄지걸쇠가 달린 이런 손잡이는 손잡이를 잡고 엄지걸쇠를 눌러야 하기에 장애인의 출입을 제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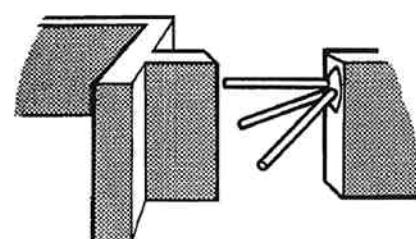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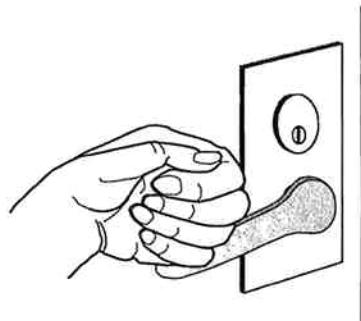


이런 종류의 손잡이는 이용자가 손잡이를 꼭 잡아야 하기에 출입이 원활치 않습니다.

출입문 손잡이를 바꾸거나 수정하는 일은 대부분의 경우 비교적 쉽고 저렴한 일입니다. 둥그런 손잡이의 경우 래버식 손잡이로 바꾸거나 래버 설치로 개선이 가능합니다. 때로는 엄지걸쇠를 사용치 않아도 되도록 하거나 철물 자체를 바꾸는 일도 가능합니다. 평면식으로 당겨야 열리는 손잡이의 경우 고리식의 손잡이로도 바꿀 수 있겠습니다.

## 출입구의 회전대 및 경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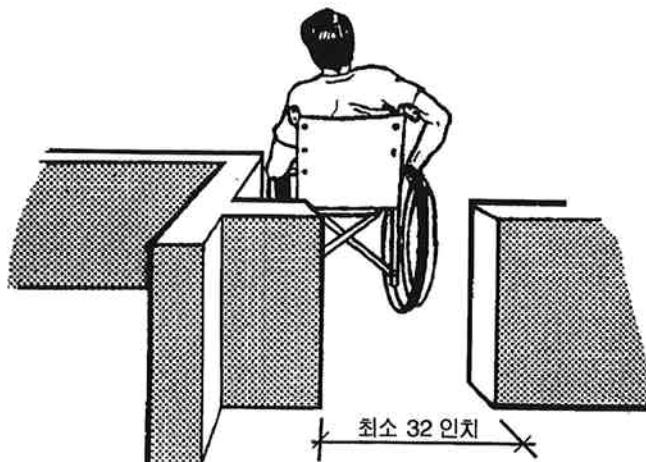
출입구에 비좁은 회전대를 갖추고 있는 사업체는 장애인의 출입을 제한합니다. 통상의 회전대의 경우 훨체어, 지팡이, 보행기, 목발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활용이 안됩니다. 회전대가 쓰여질 경우, 장애인 출입가능 회전대 또는 출입 공간이 가능하다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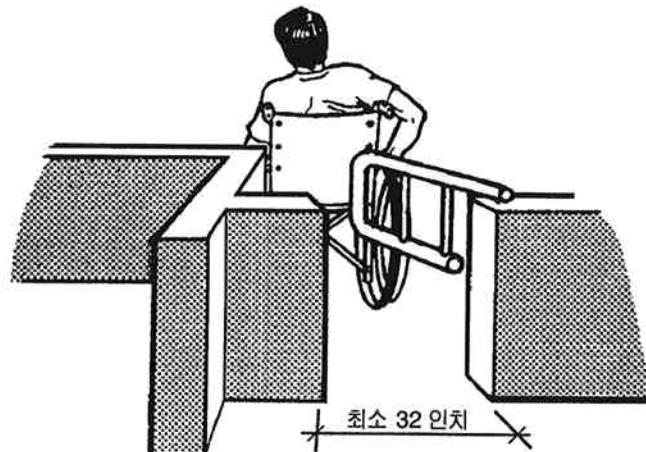
래버식 손잡이는 꼭 잡거나, 집거나, 비틀지 않아도 되기에 출입이 원활합니다.

이런 종류의 회전대는 대부분의 장애인의 출입을 제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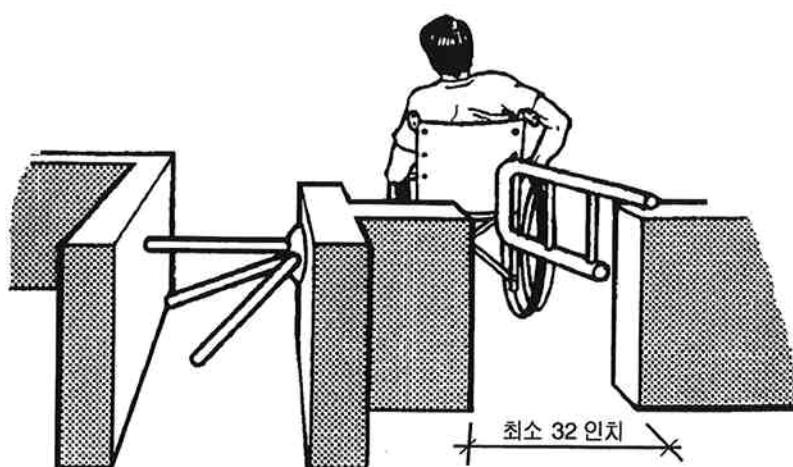
장애인 출입을 제한하는 회전대가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고 별다른 출입가능 출입구가 없는 경우, 가능하다면 회전대를 제거하거나, 대체하거나, 변형시켜서 장애인 출입을 가능토록 만들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체에 있어서 회전대를 제거하거나 변형시키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만약 2개 이상의 출입구가 있는 사업체일 경우 그 중 하나를 출입가능 출입구로 만드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게에 회전대가 입구에 설치되어 있으나 출구가 (회전대가 없는) 따로 있는 경우, 그 출구를 대체 출입구로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구의 바깥쪽에 손잡이를 달고 이 출입문은 장애인 출입가능 출입문이라는 표지를 달면 됩니다.



출입가능 통로를 위해 회전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출입가능 여닫이문의 예



회전대 옆에 출입가능 여닫이문을 설치했습니다

## 선반 및 거동 공간

출입구 출입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한 후, 장애인이 어떻게 상품 또는 물건에 가까이 갈 수 있는지를 생각하여야 합니다. 판매되는 상품이 고객의 선택을 위하여 선반에 진열되거나 저장되어 있을 때 가능한 한 장애인 출입 원활 통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선반, 진열대 주위의 거동 공간이 좁은 경우 그 공간을 넓혀야 합니다. 통상 너비 36인치 이상의 통로가 필요하고 코너 공간은 그 보다 약간 더 넓어야 합니다. 돌아나가기 위해 180도 회전이 필요한 경우 60인치의 지름을 가진 공간 또는 너비 36인치 이상의 "T"자형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T"자형의 공간은 각 너비가 36인치 이상이어야 하며, 세로 60인치, 가로 60인치 공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충분한 거동 공간을 제공하자면 진열공간과 선반공간을 많이 줄여야 하므로 수익성에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사업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도 출입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만약 출입편의 도모가 판매 구역의 어느 부분에서 가능치 않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점원이 도와주는 등의 다른 방법이 간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계단을 통하여서만 구매가능한 상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모든 상품을 훨체어 이용자들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 상품은 어떤 높이에 놓여 있어도 좋습니다. 다만, 집어주거나 보여줄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할 뿐입니다.

판매 상품은 어떤 높이에 있더라도 좋습니다. 다만 점원이 고객의 요구에 따라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코너의 90도 회전을 위하여 가로 3피트, 세로 3피트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상품 또는 진열 등의 물건이 통행로를 막을 수 있으니, 좁은 곳에는 방지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책이 3피트 공간의 출입가능 통로를 막고 있습니다.



선반, 진열대, 싱크등을 지나기 위하여서는 최소 3피트의 너비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진열대와 선반 사이의 통로에 최소 36인치의 통로 너비를 확보합니다.



점원이 상품을 꺼내어 고객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물건에 대하여 그 상품설명서(라벨)을 읽어줌으로서 시각 장애인을 돕고 있습니다.

## 판매 및 주문 카운터

서비스 또는 판매 카운터가 제공되는 경우 가능한 한 장애자 이용이 원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장애자 이용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중요한 사항입니다.

현금 계산기 (케쉬 레지스터)가 놓여진 경우, 카운터의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6인치 이하이어야 하며 길이는 36인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품, 서비스, 현금 등이 교환될 수 있는 낮은 표면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근처에 또 다른 보조 카운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매표 카운터, 은행 금전출납대, 호텔/모텔 접수대, 판매/서비스 카운터, 그 외 상품 및 서비스가 판매, 제공, 또는 배달되는 카운터의 경우, 36인치 이상 길고, 바닥으로부터 36인치 이하에 설치되어 있어야 장애인 이용이 원활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근처에 보조 카운터를 설치하거나, 카운터 옆을 이용하거나, 접을 수 있는 선반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최고 36인치의 높이 이외에도 모든 장애인 이용편의를 고려한 카운터는 카운터 앞의 공간이 훨체어 이용자가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공간은 최소 30인치 x 48인치 이어야 하며, 카운터와 평행을 이루거나 직각으로 되어있어도 좋습니다. 또한, 상품 및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업체의 출입 원활 통로, 출입 원활 출입구 등과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용편의를 고려한 판매/서비스 카운터를 제공하는 일, 또는 책상, 식탁 등의 보조 카운터를 주변에 제공하는 일이 어려운 경우, 조금 더 영구적인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종이 끼우개판 (클립보드) 또는 무릎 판자 (웹보드) 등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 이용가능 카운터는 최소 36인치 길이로 바닥으로부터 36인치 이하입니다

판매/서비스 카운터 —  
앞에는 30인치 x 48인치  
공간을 내어 훨체어 및  
전기 스쿠터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금계산대가 있는 장애인 이용가능 판매 카운터

그로서리 상점 등에서 볼 수 있는 계산대 통로(책아웃)의 조건은 다릅니다. 장애자 이용가능 통로인 경우 너비가 최소 36인치이어야 하며, 국제 심볼로 만들어진 표지가 통로 위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장애자 이용가능 통로의 카운터는 최고 38인치의 높이입니다. 카운터와 계산대 통로 사이에 돌출부가 있는 경우, 돌출부의 최고 높이는 40인치입니다.

장애인 이용가능 계산대 통로의 숫자는 총 계산대 통로 수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한 예로서, 1개에서

4개의 계산대 통로가 제공되는 경우, 그 중 하나 이상은 장애인이 이용 가능하여야 합니다. 만약 5개에서 8개의 통로가 있는 경우, 장애인 이용가능 통로는 2개가 되어야 합니다. 급행 계산대 (익쓰프레스 레인)를 포함하여, 각 유형별의 계산대 통로는 1개 이상의 장애인 이용가능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ADA 출입편의 도모 설계기준에는 계산대 통로 및 판매/서비스 카운터에 대한 준수사항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 음식 제공 카운터

음식 및 음료수가 제공되는 카운터가 바닥으로부터 34인치 이상인 경우, 60인치 이상 깊고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34인치 이하인 카운터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이용편의를 돕습니다. 장애인 이용이 편리한 카운터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가까이 있는 장애인 이용가능 식탁에서 음식을 공급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장애인 이용가능 카운터, 술판매대(빠), 식탁등을 제공할 수 없을 때, 가능한 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다른 곳의 식탁으로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됩니다.

서비스를 위하여 고객이 줄을 서야 하는 자가서비스(셀프서비스) 식당의 경우, 가능한 한 휠체어 이용자가 그 곳에 접근하고, 서있을 수 있을 만큼의 거동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최소 36인치 너비가 되어야 하고 42인치이면 더욱 좋습니다. 만약 서는 줄의 방향이 바뀌게 되면, 예를 들어 180도 회전, 더욱 넓은 회전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존 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대체 방법은 기다리는 줄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통로(루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가서비스로 양념, 포크, 칼, 그외 식사도구가 제공되는 경우, 그 위치의 높이는 옆에서 닿을 수 있는 경우 최고 54인치, 또는 전면에서 닿는 거리 최고 48인치로 하여야 합니다 (ADA 출입편의 도모 설계 기준 4.2항목 참조). 만약, 이러한 물건들을 이용이 원활한 위치에 배치할 수 없는 경우, 가능한 한, 직원으로 하여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카운터에서  
식사하는 경우  
카운터를 열 수 있도록  
함으로서 무릎공간을  
제공합니다.

음식제공 카운터를 낮춤으로서 음식을 선택하고  
받을 수 있는 이용편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선반을 아래로 내려서  
이용편의 표면을 만들어  
커피를 준비할 수 있는  
표면을 제공합니다.

양념 등을 위하여 선반을 내렸습니다.

## 고정의자 및 식탁

식당, 스낵바 등에서 식탁이 제공되고, 그 식탁이 바닥이나 불박이식이라면, 가능한 한도내에서 5%의 식탁 또는 최소 1개의 식탁 (20개 이하가 제공되는 경우)이 장애자 이용가능하여야 합니다. 장애자 이용가능한 식탁의 경우, 가능한 한 휠체어 이용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좌석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움직일 수 있는 의자를 사용하여 휠체어 이용자에게 자리를 제공할 때는 의자를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피크닉 지역, 놀이터, 또는 페티오(뜰)에 쓰여지는 고정식탁에도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식탁 높이: 최고 34인치,  
최소 28인치

무릎 공간: 최소 27인치  
(바닥에서 식탁  
밑부분까지)

바닥 공간: 좌석마다  
30인치 x 48인치

무릎공간은 식탁밑  
최소 19인치까지

영구 고정식탁에서의 장애자 이용가능 좌석 위치

고정의자 또는  
고정식탁을 제공하는 경우,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이  
가능한 한도내에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이용가능 식탁은 높이가 34인치 이하이고, 바닥에서 최소 28인치 높이입니다. 무릎 공간은 바닥에서 식탁 밑바닥까지 27인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 이용 가능 통로가 각 이용가능 식탁으로 이어져야 하며, 자리에는 30인치 x 48인치의 공간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공간은 식탁밑으로 19인치가 연장이 되므로서 다리/무릎 공간을 위한 여유를 제공하게 됩니다.

고정식탁이 제공되는데 장애자가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식탁 확보도 어려울 경우에는, 가능한 한 다른 장소에서라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른 장소는 장애인 뿐 만을 위한 곳이 아닌, 모든 고객을 위한 곳이어야 합니다. 어떤 한 구역만을 장애인을 위한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정책 및 절차

사업체는 대고객 정책 및 절차를 검토하여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또는 제외시키는 부분은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한 상점의 정책이 동물을 들이지 않는 것일 경우, 시각 장애자를 위한 맹도견 및 청각 장애자를 위한 보청기 사용하는 것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장애자 출입 가능 출입구를 영업시간 중 잠그고 있는 상점일 경우 정책을 바꾸어서 영업시간 중에는 열어두어야 할 것입니다. 안전의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호출박쓰 또는 부저를 (장애인 이용 가능 위치 및 높이에 표시판을 두어 나타냄) 두어 장애인이 직원을 불러 문을 열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자리를 한 곳으로 국한시킨 식당의 경우 정책을 개정하여 다른 이에게도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의 선택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고객과의 의사 소통

청각 또는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판매직원과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의사소통을 해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 소통의 방법은 고객의 능력과 주제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각 장애자의 일부는 언어 전달이 가능한데 비하여 일부는 언어 전달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청각/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은 메세지를 전달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거나 직원의 주의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치 않을 시 물건의 가격 등 간단한 질문은 펜과 종이로 글을 써서 이야기하거나, 언어와 글로 써 할 수도 있습니다. 직원은 글로나

언어와 글로 써 하는 의사 소통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글로 물어보는 것은 적절한 의사 소통입니다.

더욱 복잡하고 장황한 의사 소통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화 통역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또는 집을 사려고 협상할 때 등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의사 소통은 펜과 종이 만으로도 이를 수 있는 간단한 것들입니다.

청각 또는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반 전화 대신 청각 장애자를 위한 전화 장치 (TDD)를 사용합니다. 이 장치는 키보드로 메세지를 기입하고 화면을 통하여 TDD를 쓰는 상대편과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TDD를 이용하여 TDD를 갖추지 못한 사업체 또는 개인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하여 ADA는 육성전화에서 TDD, TDD에서 육성전화 등이 가능한 무료, 전국적 연결 네트워크를 설립하였습니다. TDD를 쓰는 고객으로서 귀하의 사업체에 연락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은 연결 네트워크를 써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결 네트워크는 TDD를 갖고 있는 교환수가 TDD와 육성메세지를 통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화하는 사람이 TDD로 전화를 하고, TDD로 들어온 전화를 교환수가 귀하의 사업체로 연결시킵니다. 전화를 한 사람은 TDD로 메세지를 치고, 교환수는 그 메세지를 육성으로 읽습니다.

귀하는 육성으로 말하시고 그 메세지는 TDD로 기록됩니다. 교환수는 정확한 통역을 제공하도록 교육받으며 개인적으로 대화에 관여하지 않고 비밀을 보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결 네트워크를 이용한 전화는 약간 더 시간이 걸립니다. 연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TDD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육성전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세금여신 및 공제

사업체가 ADA를 준수하는 것을 돋기 위하여 세법 제 44조는 소기업을 위한 세금여신을 허용하고, 세법 제 190조는 모든 사업체에 세금공제를 허용합니다. 세금여신은 전년도 수입 총액이 \$1,000,000 이하 또는 30명이하의 종업원을 고용할 경우 적용됩니다. 본 여신은 1년 중의 적용추가 비용중 50%까지 적용되며, \$10,250까지입니다 (최고 여신 \$5,000). 세금여신은 장애물 제거 및 장애인 출입 편의 도모를 위한 개축/개선: 브레일 (Braille), 큰글자 인쇄, 청각 테이프 등의 장애인 이용 용이방법; 고객 또는 종업원을 위하여 수화 통역인을 고용하는 일 또는 특정 적용장비를 구입하는 일 등에 투입된 비용을 상쇄시키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세금공제는 모든 사업체에 적용되며 연별 최고 \$15,000입니다. 세금 제공은 장애물 제거, 개축에 쓰여진 비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여신 및 세금공제 항목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DOJ ADA 정보 라인으로 연락을 하십시오 (전화 번호는 정보원에 나와있습니다).

## 신축 및 개축

신설 시설중 1993년 1월 26일 또는 그 이후에 입주가 이루어진 곳은 ADA 장애인 출입가능 기준(이하 기준)의 기준에 준하거나 이를 능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992년 1월26일 또는 그 이후 생겨난 시설, 공간, 또는 어떤 부분에 대한 개축은 (신단장 포함) 기준에 준하여야 만 합니다. 만약 시설을 신축하거나 기존 시설을 수정할 경우에는 (예를 들면, 주차장의 줄을 다시 그리거나, 또는 출입문을 바꾸거나 판매 카운터를 제거할 때) 기준과 제 111번 법규를 참조하십시오. 단장 또는 수정이 공간이나 어떤 부분의 이용도에 영향을 끼칠 때 개축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진열 카운터를 설치하는 것, 판매 영역의 벽을 이동시키는 것, 설비를 바꾸는 것, 출입문을 바꾸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벽에 페인트를 다시 칠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관리 작업은 ADA에서 개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많은 지역사회나 주정부, 또는 지역 장애자 출입활성화 관련 법령에 의해 건축법령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방별 장애자 출입활성화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ADA 준수 사항과 지방법령 모두를 따라야 합니다.

## ADA 정보원

### 법무성 ADA 정보선

ADA 정보선은 ADA장애인 출입 가능 설계 기준 및 그 외 사업체, 비영리단체, 주정부, 지방정부 등에 적용되는 ADA 항목에 관한 기술적 보조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중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ADA 정보자료 주문을 위한 24시간 자동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800-514-0301 (육성)  
800-514-0383 (TDD)

컴퓨터로 다운로드하시려면:  
전자 게시판  
202-514-6193

Internet  
<http://www.usdoj.gov/crt/ada/adahom1.htm>

### 장애 및 사업 기술 도움 센터 (DBTACs)

이 10개의 지역 센터는 교육청이 자금 조달하여 ADA 관련 기술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무료 전화번호가 여러분 지역내의 센터와 연결시켜 드립니다.

800-949-4232 (육성 및 TDD)

### 출입편의 도모 위원회

ADA 출입편의 도모 지침관련 기술적 보조를 제공합니다.

800-872-2253 (육성)  
800-993-2822 (TDD)

전자 게시판  
202-272-5448

### 균등 고용기회 위원회(EOC)

EOC는 ADA의 15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체 관련 규정에 대한 기술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관련 질문  
800-669-4000 (육성)  
800-669-6820 (TDD)

고용관련 서류  
800-669-3362 (육성)  
800-800-3302 (TDD)

### 지방도서관

사업체에 적용되는 제 3 법규에 대한 것을 포함한 기술 도움 자료들이 전국 15,000 도서관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모음집은 ADA Information File(ADA 정보화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방 도서관에 연락하여 그곳에 ADA 정보화일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또한 지역 DBTAC를 연락하여 ADA 정보화일을 소장하고 있는 지방도서관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800-949-4232).